산업통상자원부 http://www.motie.go.kr	보도참고자료	정부혁신 보다나은 정부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포일시	2020. 1. 9	담당부서	지역경제진흥과
담당과장	박덕열(044-203-4420)	담 당 자	김다은 사무관(044-203-4405)

상생형 지역일자리 선정·지원 위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1.9일 국회 통과

- 올해 상반기부터 상생형 지역일자리 선정 가능 -

□ **상생형 지역일자리**의 **선정과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담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하 '균특법') **개정안**이 **'20.1.9(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 작년 1.31일 **광주형 일자리 타결**을 계기로 **지역 노·사·민·정 협의를 통한 일자리 창출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 확산방안」**[*]('19.2.21, 부처합동)이 발표되었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균특법 개정 작업**이 같은 해 **2월부터 추진**[*]되었다.

* 법안 발의('19.2.22 홍의락 의원, 3.6 송갑석 의원, 3.8 어기구 의원) → 3개 법안 통합 및 산중위 대안의결(10.2) → 법사위 의결(11.27) → 본회의 통과('20.1.9)

□ 동 법안에 따르면 상생형 지역일자리란 **지역 투자 촉진**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자체, 기업, 근로자, 주민** 등 다양한 경제주체 간 **근로여건, 투자계획, 복리후생 또는 생산성 향상** 등에 대한 **합의**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으로서,

○ **지자체의 신청**이 있는 경우 산업부 소속 **상생형 지역일자리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산업부 장관**이 **선정**하게 된다.

○ 상생형 지역일자리로 선정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참여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입지·투자·세제 특례, 근로복지·정주환경 개선** 등 **정부의 종합패키지 지원**이 제공될 예정이다.

< 상생형 지역일자리 패키지 지원내용 예시('19.2.21 대책 중) >

구분	지자체	중앙정부
기업	▪ **재정사업 투자보조금** (투자규모 일부 보조, 예:10%) ▪ **공유지 임대료 인하, 수의계약 허용** ▪ **관내 도로건설** 등 인프라 구축 ▪ **취득세·재산세 감면**	▪ **임대전용 산단 임대료 할인** (年 임대료 인하 : 조성원가 3→1%) ▪ **펀드지원, 中企 전용자금 마련, 우대보증** 공급(보증료율 감면 등) ▪ **지투보조금 보조율 가산 및 한도 상향** ▪ **국유지 임대료 인하, 수의계약 허용 등**
근로자	▪ **행복·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 공동지원** ▪ **근로자 건강증진 사업** ▪ **청년내일채움공제 추가 지원**	▪ **직장 어린이집·공공어린이집 우대 지원** ▪ **산단 기숙사·통근버스** 지원 ▪ 산단 내 **문화·편의시설** 확충 ▪ **지역 직업계고·전문대 맞춤 교육**

※ 지역·산업·기업별 특성에 따라 적용 가능한 방안을 조합하여 패키지로 지원

□ 현재 광주 이외에도 **여러 지역***에서 **지역 노사민정 상생협약**을 바탕으로 **기업 투자를 유치**하는 등 **상생형 지역일자리를 추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 상생협약 체결 지역(일자) : 밀양('19.6.24), 대구(6.26), 구미(7.25), 강원(8.13), 군산(10.24)

○ 금번 국회에서 **동 법안이 처리**됨에 따라 **각 지역의 상생형 지역일자리 창출 노력**이 **보다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동 법안은 이후 정부 이송,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되고 부칙에 따라 **공포일에서 2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며,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올해 상반기 중 본격적인 제도 운영**이 가능하도록 상생형 지역일자리 선정의 **구체적 절차 등**을 정하기 위한 **하위법령 제·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 붙임 : 균특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안(의안번호 2023999)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진흥과 김다은 사무관(☎ 044-203-440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 안 번 호	23999

제안연월일 : 2019. 11. 28.

제 안 자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의안명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발의일자	경 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8780	홍의락의원	2019.2.22.	-제367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19.3.12.)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및 소위회부 -제367회 국회(임시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 (2019.3.18.) 상정 -제371회 국회(정기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 (2019.9.25.) 상정 및 의결(대안반영폐기)
	18980	송갑석의원	2019.3.6.	-제367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19.3.12.)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및 소위회부 -제367회 국회(임시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 (2019.3.18.) 상정 -제371회 국회(정기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 (2019.9.25.) 상정 및 의결(대안반영폐기)
	19055	어기구의원	2019.3.8.	-제369회 국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2019.7.12.)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및 소위회부 -제371회 국회(정기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 (2019.9.25.) 상정 및 의결(대안반영폐기)

가. 제371회국회(정기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2019.9.25.)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하여 대안을 마련함.

나. 제371회국회(정기회) 제5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19.10.2.)에서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대로 3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기술진보에 따른 일자리 수요의 감소, 주력산업의 경쟁력 약화, 신성장동력 발굴 지연으로 우리 경제의 고용창출력이 점차 약화되고 있음.

최근 지역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 여건이 녹록치 않은 가운데 광주형 일자리 타결은 우리 지역경제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함.

이에 통상적인 기업투자, 일자리 창출을 넘어 노동자와 사용자, 시민사회, 지방자치단체 등 지역의 경제주체 간의 상생협약을 통해 적정 근로조건, 노사관계 안정, 생산성 향상, 원·하청 개선, 인프라·복지 협력을 도모하여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상생형지역일자리 모델'의 확

산이 필요함.

상생형지역일자리 사업은 상생과 협력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 내 산업 경제 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이며, 지속 가능한 지역 일자리 창출, 노동인권 보호,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노동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이에 상생형지역일자리 사업의 지정 및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 기업, 근로자, 주민 등 다양한 경제주체 간 근로여건, 투자계획, 복리후생 또는 생산성 향상 등에 대한 합의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을 상생형지역일자리로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2제1항 신설).

나.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상생형지역일자리의 선정을 신청하도록 함(안 제11조의2제2항 신설).

다.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으로 상생형지역일자리의 선정을 심의·의결하는 상생형지역일자리심의위원회를 둠(안 제11조의2제3항 신설).

라. 상생형지역일자리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상생형지역일자리 사업 참여 기관·법인·단체에 대한 출자·출연 근거 신설, 출자·출연을 받은 기관·법

인·단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 배제 및 국유·공유재산의 사용 특례를 신설함(안 제11조의2제5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

마. 이 법 시행 당시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으로부터 종전에 출자·출연을 받은 기관·법인·단체가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상생형지역일자리에 참여하는 경우 제11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 따라 출자·출연을 받은 것으로 보는 간주 규정을 둠(안 부칙 제2조).

법률 제 호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상생형지역일자리의 선정·지원 등) ① 국가는 지역의 투자를 촉진하고 지역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업, 근로자, 주민 등 다양한 경제주체 간 근로여건, 투자계획, 복리후생 또는 생산성 향상 등에 대한 합의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하 “상생형지역일자리”라 한다)을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행정구역에서 상생형지역일자리의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상생형지역일자리의 선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상생형지역일자리의 선정 및 선정취소를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상생형지역일자리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상생형지역일자리를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관할 행정구역의 지역경제 및 일자리에 대한 파급효과

2. 참여 경제주체 간 합의내용 및 역할분담의 합리성

3. 해당 상생형지역일자리의 지속가능성

4.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선정된 상생형지역일자리에 대하여 소관 업무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⑥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을 말한다)은 제4항에 따라 선정된 상생형지역일자리에 대한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상생형지역일자리에 참여하는 기관·법인·단체에 출자하거나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출자·출연을 받은 기관·법인·단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상생형지역일자리에 참여하는 기관·법인·단체에 대하여 수의계약으로 국유·공유재산을 사용·수익 또는 대부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유재산의 사용료 및 대부료 산정기준은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제33조(같은 법 제47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공유재산의 사용료 및 대부료 산정기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제1항·제23조·제32조·제33조에도 불구하고 조례

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행정구역에서 상생형지역일자리가 선정된 경우 지원사업의 추진실적·지원효과 및 차년도 지원계획 등을 매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상생형지역일자리에 대한 지원 필요성과 효과를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생형지역일자리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항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⑩ 위원회는 위원 구성 및 심의·의결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⑪ 위원회의 위원 명단과 회의록은 공개하여야 한다.

⑫ 그 밖에 상생형지역일자리의 신청·선정·취소 절차와 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제11항에 따른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으로부터 종전에 출자·출연을 받은 기관·법인·단체가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상생형지역일자리에 참여하는 경우

제11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출자·출연을 받은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1조의2(상생형지역일자리의 선정·지원 등) ① 국가는 지역의 투자를 촉진하고 지역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업, 근로자, 주민 등 다양한 경제주체 간 근로여건, 투자계획, 복리후생 또는 생산성 향상 등에 대한 합의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하 "상생형지역일자리"라 한다)을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행정구역에서 상생형지역일자리의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상생형지역일자리의 선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상생형지역일자리의 선정 및 선정취소를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상생형지역일자리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

	회”라 한다)를 둔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상생형 지역일자리를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관할 행정구역의 지역경제 및 일자리에 대한 파급효과 2. 참여 경제주체 간 합의내용 및 역할분담의 합리성 3. 해당 상생형지역일자리의 지속가능성 4.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선정된 상생형지역일자리에 대하여 소관 업무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⑥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

	관을 말한다)은 제4항에 따라 선정된 상생형지역일자리에 대한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상생형지역일자리에 참여하는 기관·법인·단체에 출자하거나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출자·출연을 받은 기관·법인·단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상생형지역일자리에 참여하는 기관·법인·단체에 대하여 수의계약으로 국유·공유재산을 사용·수익 또는 대부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유재산의 사용료 및 대부료 산정기준은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제33조(같은 법 제47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공유재산의 사용료 및 대부료 산정기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법」 제22조제1항·제23조·제32조·제33조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행정구역에서 상생형지역일자리가 선정된 경우 지원사업의 추진실적·지원효과 및 차년도 지원계획 등을 매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상생형지역일자리에 대한 지원 필요성과 효과를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생형지역일자리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항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⑩ 위원회는 위원 구성 및 심의·의결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⑪ 위원회의 위원 명단과 회의록은 공개하여야 한다. ⑫ 그 밖에 상생형지역일자리의 신청·선정·취소 절차와 위원

	회의 구성·운영 및 제11항에 따른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